고성군청소년문화의집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
(의안번호 제681호)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1. 3. 14 고 성 군 수

나. 회 부 일 자 : 2001. 3. 16

다. 상 정 · 의 결 일 자 : 2001. 3. 26 총무위원회 상정 · 의결

2. 개정사유

○ 행정편의주의 요소가 강하고 군민의 권리를 포괄적으로 제한하는 규정을 완화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려는 것임.

3. 주요골자

○ 입장제한 완화(안 제16조)

4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○ 고성군 청소년 문화의 집 입장 제한규정이 행정편의 위주의 요소가 강하고 군민의 권리를 포괄적으로 제한하고 있어 이를 행정규제개혁 차원에서 규제를 완화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려는 것은 타당하다고 하였음.

5. 질의 및 답변 : 없음

6. 토 론 : 없음

7. 심사결과 : 2001. 3. 26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